

[별표 1]

기본징수율의 산정 (제4조제1항 관련)

방송광고 매출액 구간	기본징수율(%) 산정방법
1조원 초과	$[5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- 1\text{조원}) \div 1\text{조원}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 (6.0을 초과하는 때에는 6.0으로 한다)
1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	$[4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- 1,000\text{억원}) \div 9,000\text{억원}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$[3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- 500\text{억원}) \div 500\text{억원}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$[2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- 100\text{억원}) \div 400\text{억원}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$[1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- 50\text{억원}) \div 50\text{억원}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
50억원 이하	$[0.0 + \{(\text{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} \div 50\text{억원})\}] \times \text{조정계수}$

비고

1.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.
2.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·제6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, 제3조제2호·제3호·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.069를 감경하여 조정한 0.931로 한다.